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0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이원택·정동영·이기헌

이병진 · 임미애 · 서삼석

이건태 • 위성곤 • 문대림

이수진 · 김윤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하여금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신설).
-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검사·지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 2 신설).
- 다.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2(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5

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 으로 본다.

제48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사업 등"을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로 한다.

- 1. 어선소유자
- 2. 공단
- 3. 중앙회
- 4. 그 밖에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제5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중앙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u>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u>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u> <신 설></u>	제45조의2(공단 소속 직원의 검
	사 및 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
	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
	여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
	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48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 제4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 을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 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 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감독관"은 "공 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어선소유자
- 2. 공단
- 3. 중앙회
- 4. 그 밖에 어선의 사고 및 어 선원재해 예방사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생략)

<u><신</u>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 ②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의 내용・ 절차 • 방법 등에-----
 - 제5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유)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중앙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 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